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'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 고시 알림

- 1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 제25조의2(훈령·예규등의 사후 심사·검토)에 따른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·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고시)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2.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, 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* 및 우리 처 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고시훈령예규(고시전문) 및 제개정고시)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*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반영은 개정일로부터 시일 다소 소요될 수 있음
- 붙임 1. '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고시 1부.
 - 2. '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' 전문 1부. 끝.



문은희

수신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, 한국제약바이오협회

한연해

협조자

이다은

시행 의약품관리과-4231 (2025. 5. 12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63 팩스번호 043-719-2650 / Ide2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

과장